

의안번호	2209331
의 퇴 인	조인철 의원
회 답 일	2025. 4. 1.
추계번호	25F192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0조의3 (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	○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·이전기업을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신설 - (감면율) 50%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 - (적용기한) 2028.12.31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0조의3 (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른 경우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시설 등을 복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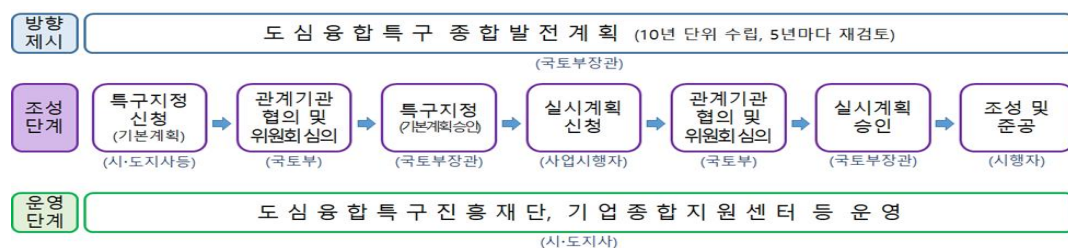
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¹⁾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구역을 의미

-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대전광역시, 광주광역시, 울산광역시 등 5개 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할 부동산의 규모 및 금액을 전망하여야 하지만, 현재로서는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의 범위, 이들 기업이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할 부동산의 규모 및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2024년 11월 정부가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후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실시계획 용역을 수립에 착수하는 단계로서 향후 실제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
 - － 각 지자체별로 본격적인 후속 행정절차 이행의 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 존재
- 참고로,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는 다음과 같음
 - － 기본계획 수립(시·도지사등) → 기본계획 승인, 지구 지정(국토교통부장관) → 실시계획 수립(시행자) → 실시계획 승인(국토교통부장관)

[그림 1]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운영 절차

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등이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할 부동산의 규모 및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함

1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은 도심융합특구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,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